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점직교수요원 명단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정기적
제출 근거 마련〉

■ 모경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952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3

[참고1]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겸직임용 교수요원 운영현황

[참고2]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외래강사 현황 및 자격 기준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모경종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26.
3. 회부연월일 : 2024. 1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로써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에 극우·뉴라이트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강사로 대거 포진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현행 「공무원 인재개발법」은 겸직교수요원 제도를 통해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들의 임용 현황과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겸직교수요원의 명단과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 제3항).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하여금 겸직교수요원의 명단(성명, 소속 및 직위 등 관련 정보 포함)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교수요원의 <u>겸직임용</u>) ① · ② (생략) <u><신설></u>	제11조(교수요원의 <u>겸직임용 등</u>)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겸직임용된 교수요원의 명단을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u> 1. <u>겸직 교수요원의 성명, 소속 및 직위</u> 2. <u>겸직기간</u> 3. <u>담당교과목</u> 4. <u>겸임수당 지급 현황</u>

2. 검토의견

현행법 제11조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원과 관계없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해당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할 수 있고, 해당 교수요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개정안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겸직교수요원의 성명 등 신분, 겸직기간, 담당교과목, 겸임수당 지급현황 등 관련 사항이 포함된 명단을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에 따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강사로 섭외되어 강의를 진행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겸직교수요원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겸직교수요원의 명단 등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겸직교수요

1)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1조(교수요원의 겸직임용) 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원과 관계없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해당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임용되는 교수요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미리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겸임하는 교수요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그 자격에 대한 사전적 검증을 면밀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부적절한 겸직교수요원 임용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 장치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다만, 개정안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겸직임용된 교수요원의 명단(겸직 교수요원의 성명, 소속 및 직위, 겸직기간, 담당교과목, 겸임수당 지급 현황 포함)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 제11조제1항은 각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겸직교수요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각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임용한 겸직교수요원의 명단을 일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각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겸직교수요원의 명단 등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현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겸직임용 교수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33개) 중에서도 1개 기관에서만 운영(2명)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외래강사 초빙 제도의 경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훈령)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바, 향후 강사 초빙
현황 공개 등 투명성 확보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2

참고 1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겸직임용 교수요원 운영현황

자료: 인사혁신처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현황 : 총 34개 기관

○ 겸직임용 교수요원 운영현황 : 1개 기관(2명 운영)

소 속	기관명	주요기능	겸직임용 교수요원	비고
독립 기관 (28)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	경호안전 분야 전문가 양성	X
	감사원	감사교육원	감사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X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공무원 반부패·청렴교육	X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인재개발원	우정 전문인력 양성	X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교육분야 전문인력 육성	X
	외교부	국립외교원	전문외교관 양성 및 외교안보 문제 연구	X
	법무부	법무연수원	법무행정 전문인력 양성	X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가공무원 기본·전문교육	X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O 2명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재난안전·민방위 전문인력 양성	X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업·식품 분야 전문교육	X
	환경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환경분야 전문인력 양성	X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토·교통 분야 전문교육	X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해양수산공무원 교육	X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 전문인력 양성	X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	관세 전문인력 양성	X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	X
	조달청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조달분야 전문교육	X
	통계청	통계교육원	통계분야 전문교육	X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	민주경찰 양성 전문교육	X
	경찰청	경찰수사연수원	수사·보안요원에 대한 전문교육	X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신임경찰관 및 전·의경 교육훈련	X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소방공무원 양성	X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공무원 양성	X
	산림청	산림교육원	산림분야 전문교육	X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기상분야 전문교육	X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X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X
병설 기관 (6)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센터	기록관리 전문인력 양성	X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교육연구센터	법과학분야 전문인력 양성	X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인재개발과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	X
	법제처	법제교육과 법제교육센터	법제분야 전문교육	X
	병무청	혁신행정담당관 병무연수원	병무행정 전문인력 양성	X
	경찰청	경찰대학 교무과	정예 경찰간부 양성	X

※ 병설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 설치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

□ 국가인재원의 외래강사 현황 : 939명^(24년)

□ 외래강사 자격 기준

○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인품이 있는 전문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38조(외래강사의 초빙) 각급 교육과정의 특정교과목의 강의·분임지도 등 교과목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인품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 겸직임용 교수요원과 외래강사의 차이

○ 외래강사는 각급 교육과정의 교과목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마다 개별 섭외되어 당해 교육과정 운영기간 동안 활동하며*,

- 외래 강사초빙 시에는 겸직임용과 달리 별도의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래 강사는 겸임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겸직임용된 교수요원의 경우, 임용 기간을 정하여 임용 및 활동하게 함

** 겸직임용 교수요원은 겸임수당 지급대상

【겸직임용 교수요원과 외래강사의 비교】

구분	겸직임용 교수요원	외래강사
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1조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2조, 제38조
개념	·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기 위하여 보유 중인 본직기관의 직위 외에 교수요원의 직위를 추가로 부여받은 교수요원(일정 기간 동안 지속 운영)	· 각급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 강의·분임지도 등 교과목 운영을 위하여 초빙된 외부 전문가(수시 탄력적으로 운영)
겸임수당	· 겸임수당 지급 가능	· 겸임수당 지급 불가